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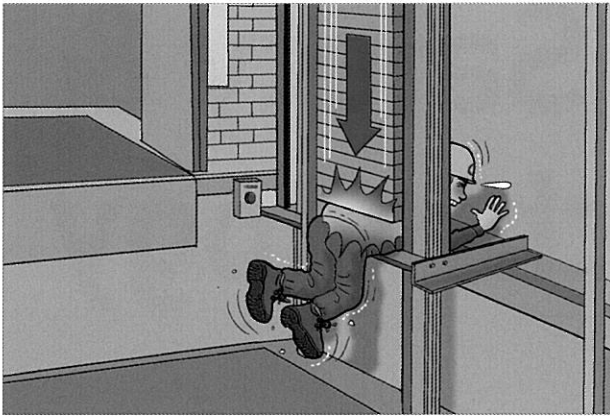


화물용 승강기 점검 중 균형추에 협착

업종	고무및플라스틱제조	가해물	균형추	피해정도	인적	사망 1명
생산물	플라스틱생활용기	재해유형	협착		물적	-

1. 재해개요

자재 운반용 화물용 승강기 점검을 위해 피재자가 승강기를 5층으로 이동토록 조작 후 승강구 도어스위치를 종이캡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점검하기 위해 1층 승강통로로 내려감(※ 승강기는 상승하는 중). 승강통로에서 점검 중 균형추(50kg×34개)가 하강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여 균형추와 구조물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.



2. 재해원인

- ① 승강기 주전원 미차단
- ② 안전장치 설치상태 불량
- ③ 안전장치 기능해제 후 작업
- ④ 관리감독 소홀
- ⑤ 안전교육 미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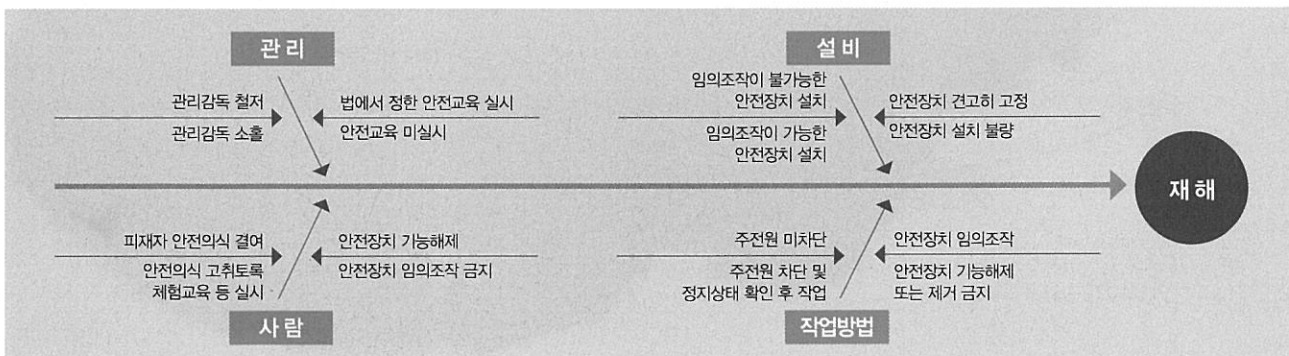
3. 예방대책

- ① 비정상 작업시 주전원 차단 및 기계설비 정지 확인 후 작업
- ②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안전장치 설치
- ③ 안전장치 기능 해제 또는 제거 금지
- ④ 관리감독 철저
- ⑤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

4. 법 위반사항
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
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세척실 내 폭발

업종	표면도포제품제조	가해물	폭발화염	피해정도	인적	부상 1명, 사망 1명
생산품	휴대폰케이스코팅	재해유형	폭발	물적		-

1. 재해개요

휴대전화 케이스를 코팅하는 사업장을 인수하여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세척기를 시험 가동하였으나 유기용제 냄새가 심하게 나 생산부 직원 2명이 원인파악을 위해 세척실 안으로 들어가 점검을 하던 중 정전기로 추정되는 발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여 8주 이상을 요하는 화상으로 입원 치료 도중 1명이 10일 만에 사망함.



2. 재해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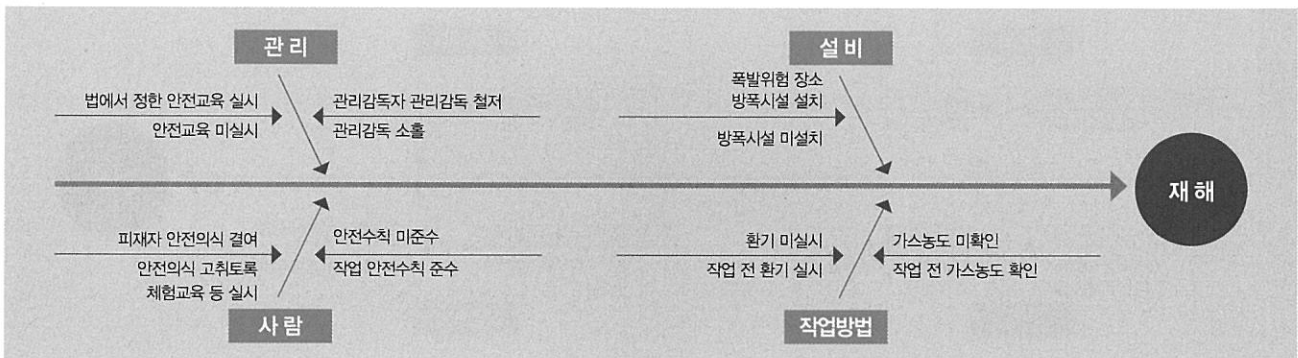
- ① 폭발위험장소 환기 미 실시
- ② 폭발위험장소 가스농도 미 확인
- ③ 세척실 내부 방폭시설 미 설치
- ④ 관리감독 소홀
- ⑤ 안전의식 결여

3. 예방대책

- ① 출입 전 환기 실시
- ② 출입 전 가스농도 확인
- ③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방폭시설 설치
- ④ 관리감독 철저
- ⑤ 안전의식 고취토록 체험교육 등 실시

4. 법 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- 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 실시.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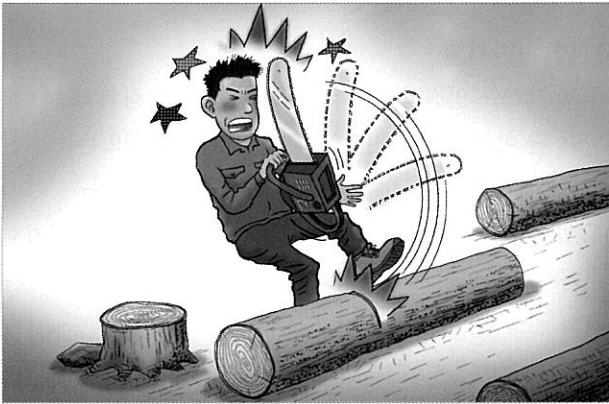


기계톱 반발로 사망

업종	임업	가해물	기계톱	피해 정도	인적	사망 1명
생산물	벌목 원목	재해유형	총독		물적	

1. 재해개요

벌목작업장에서 피재자가 벌도목된 원목들을 정리정돈 하기 위해 기계톱으로 원목을 절단하던 중 기계톱 가이드판이 절단목 사이에 끼어 빠지지 않자 발로 원목을 고정하고 무리한 힘으로 빼내던 중 기계톱이 원목에서 빠지며 튀어나와 피재자의 안면 부와 충돌하여 사망함.



2. 재해원인

- ① 무리한 힘으로 기계톱 빼냄
- ② 안전모, 안면보호망 등 보호구 미착용
- ③ 기계톱 엔진 미정지
- ④ 사고위험 위치에서 작업
- ⑤ 안전교육 미실시
- ⑥ 관리감독 소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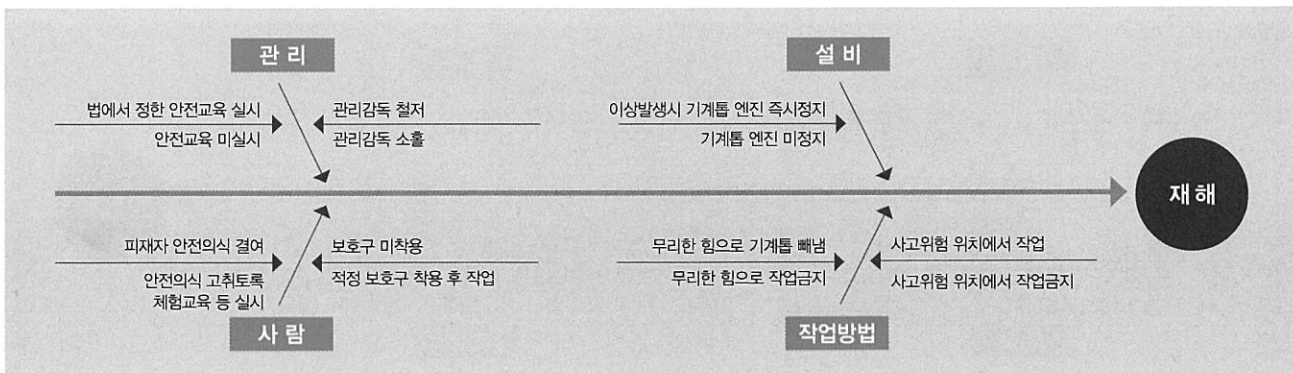
3. 예방대책

- ① 이상 발생 시 무리한 힘으로 작업 금지
- ② 안전모, 안면보호망 등 보호구 착용 후 작업
- ③ 이상 발생 시 기계톱 엔진 즉시 정지
- ④ 사고위험 위치에서 작업금지
- ⑤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
- 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 철저

4. 법 위반사항
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
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갱폼 해체 작업 중 추락

업종	건설업	가해물	공사장 바닥	피해 정도	인적	사망 1명
생산품	아파트 건축	재해유형	추락		물적	

1. 재해개요

아파트 공사현장 아파트 외벽 갱폼을 해체하는 작업 중 갱폼이 외벽으로부터 탈락되면서 약 30m 아래 바닥으로 낙하함. 갱폼 위에서 작업하던 피재자도 동시에 추락하여 사망함.



2. 재해원인

- ① 갱폼 낙하방지조치 미실시
- ② 작업 전 안전점검 미실시
- ③ 아파트 벽체와 갱폼의 체결 불량
- ④ 피재자 보호구 미착용
- ⑤ 추락방지망 등 미설치
- ⑥ 관리감독 소홀

3. 예방대책

- ① 갱폼 해체작업 시 인양장비에 매대는 등 낙하방지조치 실시
- ② 작업 전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
- ③ 아파트 벽체와 갱폼의 체결 철저
- ④ 안전대,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
- ⑤ 추락방지망 등 안전장치 설치
- ⑥ 공사현장 관리감독 철저

4. 법 위반사항
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(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
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